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0. 22 선고 2024가단1592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충주시

소송대리인 B

변론 종결 2024. 9. 24.

판결 선고 2024. 10. 22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3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 소유이던 충주시 C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가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가 이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평당 250만 원으로 책정하여 원고가 2021년경 피고로부터 합계 1,500만 원을 지급받았다.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평당 1,200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,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토지대금 미지급금 5,700만 원(= 7,200만원 ~ 1,500만원)과 사용료 3,600만 원(= 연 10%로 산정한 임료 720만 원 × 5년) 합계 9,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가. 토지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이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나. 사용료 청구에 관한 판단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,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,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,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(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34155 판결 등).

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이를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,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되었다거나, 피고가 확장,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원고의

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최지경